

# 대학혁신지원사업 시설장비·기자재 도입 심의절차 변경 안내

(2020.9.14. 대학지원1팀)

## □ 관련 근거
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(2020.3.17.)
-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(2019.5.31.)
-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(2019.10.)
-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(2019.10.)

## □ 시설장비·기자재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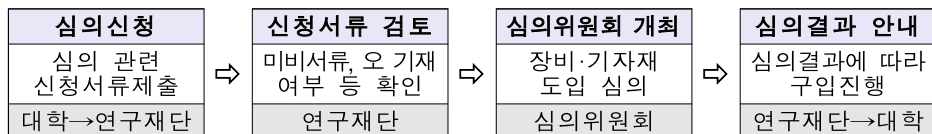
-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

구분	심의대상(구입단가 기준)	심의기관	신청방법
1	3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	한국연구재단	재단 → 대학 별도 안내
2	1억원 이상	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(NFEC)	대학 → 센터 직접신청

-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로 도입하는 모든 시설장비·기자재에 적용
- 소프트웨어는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심의대상이며, 장비와 상관없이 별도로 쓰여지는 소프트웨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

## □ 대학혁신지원사업 시설장비·기자재 도입 심의절차(심의기관 : 한국연구재단)

- 심의대상 : 3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·기자재(구입단가 기준)
  - \* 1억원 이상 시설장비·기자재 도입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비활용종합포털(<https://www.zeus.go.kr>)을 통해 직접신청
- 심의시기 : 홀수달 심의신청·접수, 짝수달 심의진행 및 결과안내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
  - \* 구체적인 신청기간 등은 재단에서 별도 안내예정
- 심의절차



## ○ 신청서류

- 심의신청 공문(전자공문)
- 시설장비심의요청서(붙임2 서식 참조)
-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서\*(해당 장비·기자재 도입 관련 부분)
  - \* 해당 관련 부분(사업내용, 예산 등)을 발췌해서 제출하되 사업계획서상의 페이지를 표시
- 비교견적서\*\*(시설장비·기자재의 구체적인 **모델명, 사양, 금액 등 표시**)
  - \*\* 비교견적서는 제조사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 제출(단, 단일견적서 제출시 해당 사유서[자유양식] 제출)

- ※ **2개 이상의 시설장비·기자재를 신청하는 경우 장비별로 분리하여 신청서류 제출**
- ※ 신청서류 검토결과 양식의 오 기재 또는 미비할 경우 반려될 수 있으므로 도입하고자 하는 시설장비·기자재의 **요구성능, 상세 사양, 견적금액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**

- 심의기준 : 사업(연구)의 부합성, 시설장비의 활용성, 시설장비의 적정성, 시설장비운영의 계획성 등 총 4개를 기준으로 심의

\* 1억원 미만 연구시설·장비 심의를 위한 부처공동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기준 적용

구분	심의항목	심의내용
1	사업(연구)의 부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·장비가 사업(연구)과 부합하는가?</li> <li>• 사업(연구)기간을 고려할 때 연구시설·장비의 도입시기가 적정한가?</li> <li>• 사업(연구) 수행에 꼭 필요한 연구시설·장비인가?</li> <li>• 정부예산으로 구축이 타당한 연구시설·장비인가?</li> </ul>
2	시설장비의 활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(연구)내에서 활용도가 높은 연구시설·장비인가?</li> <li>• 시설장비 구축 또는 사업(연구) 종료 후 타 사업(기관)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·장비인가?</li> <li>• 기관내 집적화 기능을 보유하고, 집적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시설·장비인가?</li> <li>• 명확한 근거(ex. 시장/수요조사 등)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활용도(율)를 제시한 연구시설·장비인가?</li> </ul>
3	시설장비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(사양, 수량) 및 성능을 보유한 연구시설·장비인가?</li> <li>• 연구시설·장비의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요구(책정)되지 않는가?</li> <li>• 외산 시설장비 구매요청 시, 사전에 국산 시설장비 구매/제작을 검토한 연구시설·장비인가?</li> </ul>
4	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시설·장비의 구축과 운영,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과 그 전문성을 확보하였는가?</li> <li>• 연구시설·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(안전기준 검토여부 포함), 운영비 확보방안 등의 운영계획이 적절한가?</li> <li>• 사업(연구) 종료 후의 운영(활용) 계획은 합리적이고, 타당한가?</li> </ul>

- 심의결과 :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한 후 심의결과는 **구입인정, 조건부인정, 재심의, 구입불인정** 총 4개 유형으로 최종 결정

심의결과	판정기준
구입인정	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이 인정되고, 제시한 구축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조건부인정	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등 구축타당성이 인정되나 심의의견 반영을 조건으로 구입을 허용 ※ 대학은 심의의견 반영을 증빙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구비한 후 구입을 진행
재심의	구입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의자료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
구입불인정	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장비나 심의대상이 아닌 시설장비(구입 단가 1억원 이상 장비 포함)를 신청한 경우 등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

- 후속조치
  - 구입인정 : 구매 후 30일 이내에 ZEUS(장비활용종합포털)에 기본사항을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재단에 공문으로 제출
  - 조건부인정 : 심의의견(권고사항이나 대안 등) 반영을 증빙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, 구매 후 30일 이내에 ZEUS(장비활용종합포털)에 기본사항을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재단에 공문으로 제출  
※ 심의의견 반영(수용)이 불가할 경우 사유서(증빙자료 포함) 제출 및 재심의 요청
  - 재심의 : 심의의견(권고사항이나 대안 등)을 반영하여 관련 서류 등을 재제출받아 심의위원회 재심의
  - 구입불인정 : 신청한 시설장비·기자재 구입이 불가함에 따라 대학은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을 실시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용도로 집행

□ 제7차 시설장비·기자재 도입 심의신청 안내(심의기관 : 한국연구재단)

- 심의대상 : 3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·기자재(구입단가 기준)
  - \* 1억원 이상 시설장비·기자재 도입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비활용종합포털(<https://www.zeus.go.kr>)을 통해 직접신청
- 신청기간 : 2020.9.14.(월) ~ 2020.9.29.(금)(기한엄수)
- 신청방법 :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(수신: 한국연구재단)
- 향후일정(안) : 제7차 심의위원회 개최(10월 초) → 신청대학별 심의결과 안내(10월 중)